협상에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지침

제정일 2021.06.15. 개정일 2022.12.30. [ESG상생협력처 공정계약부 042-600-819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제안요청서 : 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자고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 2. 제안서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 3.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4. 제안서 평가위원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공사에서 선정한 내 외부 위원을 말한다.
- 5. 제안서 접수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공사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계약의뢰 부서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 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위원장은 계약의뢰부서장이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 ③평가위원 위촉 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별표 1]양식의 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뢰부서

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 선정) ①계약의뢰부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②외부 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2. 대학교(전문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
- 3.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
-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계약요청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내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직원 중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계약의뢰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 1.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3.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5조2(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기피)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를 진행할 때 평가대상 업체와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신설 2022.12.30>

제 3 장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운영

제6조(평가방법 등의 공개) 계약담당부서는 평가방법, 평가일자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 접수) ①제안서 접수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시행한다.

②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 제8조(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①계약의뢰부서는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등급 및 배점, 세부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계약 의뢰 시 요청하여야 한다.
 - ②제안서의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의 경우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20점을 초과하지 못한 다.<개정 2022.12.30>
 - ③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근거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④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신설 2022.12.30>

- 제8조2(정부권장정책의 반영) 계약의뢰부서는 정부권장정책의 직·간접 구매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총 배점의 5% 이내에서 신인도 평가항목으로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인도 가점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신설 2022.12.30>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
 -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에 의한 장애인기업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8조에 의한 창업기업
- 제9조(평가실시) ①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계약의뢰부서는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명회 일시·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점수 산출) ①제안서 평가 점수는 평가항목별로 [별표 3]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이 산 정한 점수를 합계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별표 2] 서식으로 집계하여 산출한다.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②평가 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11조(평가점수 등 통보) 계약의뢰부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평가수당은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평가위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평가가 연기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확인이 되어 평가를 기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평가수당 지급대상자가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제2조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0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계약담당부서는 평가 결과에 대해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의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
- 제14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뢰부서와 계약담당부서가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별도 수립하고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최초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최초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외부위원용】

평가위원 보안 및 청렴 서약서

소 속: 직 위: 성 명:

- 1.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2. 본인은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3. 본인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과 사전 접촉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4. 본인은 상기 심사평가 안건과 관련하여 수주, 설계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치 않았으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직 원 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직 위:

성 명:

- 위 본인은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사함에 있어서,
-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또한 본인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과 사전 접촉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별표 2]

제안서평가 집계표

○ 입찰건명 :

1월 기 이 이	제안서 평가점수						
평가위원	A사	B사	C사	D사	•••		
총 점							
순 위							

【별표 3]

제안서평가 채점표

○ 입찰건명 :

평가항목		배점	입찰사별 채점				
			A사	B사	C사	D사	•••
1.기술·지식 능력	가.						
	나.						
	÷						
	소계						
	가.						
2.인력·조직 ·관리기술	나.						
	:						
	소계						
	가.						
	나.						
	·						
	소계						
	합 계	80					

년	월	일
<u>`L'</u>	包	근

평가위원: (인)

[별표 4]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평가수당	외 부	20만원
	내 부	해당사항 없음

^{*} 지급대상자가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0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사례금 지급 상한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